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거리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10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지정 취지

다수의 주민이 거니는 여의도 일대, 우신초등학교 통학로, 영등포화교소학교 통학로에 금연거리를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영등포를 구현코자 함

2. 지정 일: 2020년 9월 3일

3. 지정장소 및 범위 (별첨1 참조)

● 신규 금연거리 지정

연번	명칭	규모	위치	비고
1	경인로88길	1,364㎡	경인로88길 보행로 및 차도	

● 기존 금연거리 연장

연번	명칭	규모	위치	비고
1	신길로	440m	우신초등학교~신길8구역 통학로	연장
2	의사당대로, 여의대로, 여의나루로, 국제금융로	3,275m	여의대로, 의사당대로, 일부 보행로 및 차도(자전거도로 포함)	연장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금연 계도기간: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약 2개월간(2019. 9. 7.~ 10. 31.)
- 과태료 부과일: 2020. 11. 1.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10만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지원과(☎2670-4900)로 문의바랍니다.

[별첨 1]

● 신규 금연거리 - 1개소

연번	명칭	규모	위치	비고
1	경인로88길	1,364m ²	경인로88길 보행로 및 차도	

연번	명칭	규모	위치	비고
2	의사당대로, 여의대로, 여의나루로, 국제금융로	3,275m	여의대로, 의사당대로, 일부 보행로 및 차도 (자전거도로 포함)	파란색은 기존 금연거리

● 기존 금연거리 연장 - 2개소

연번	명칭	규모	위치	비고
1	신길로	440m	우신초등학교~ 신길8구역 통학로	파란색은 기존 금연거리